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오산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라. 의용소방대 또는 대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명 :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417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17일

발 의 의 원 : 장인수 의원

찬 성 의 원 :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라. 의용소방대 또는 대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오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활동비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화재예방 순찰활동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3.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의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략)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